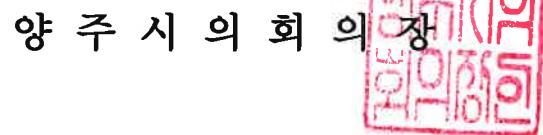


양주시의회 공고 제 2021 - 25호

「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5일



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라.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마.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(안 제6조)

3. 자치법규안: 별첨

4. 의견제출

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한: 2021년 9월 24일(금)까지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양주시 홈페이지 등
- 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 등
- 라. 제출기관: 양주시의회(의회사무과)
- 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
- 전 화: 031-8082-7063

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생년월일:
- 주 소:
- 연락처: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